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제2214241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제221433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24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1
II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339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3. 참고사항	2
III . 검토의견	3
1.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3

I.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24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4.

다. 회 부 일 : 2025. 11.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Ⅱ.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33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8.

다. 회 부 일 : 2025. 11.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현 행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의원안
○ 별표 1 <신 설>	○ 별표 1 -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특별회계)	○ 별표 1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특별회계)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권향엽의원안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어기구의원안은 어기구의원·이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권향엽의원안 및 어기구의원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특별회계 비교]

구 분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의원안
법률명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회계명	철강산업특별회계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철강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 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회계 소관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차입금 ◦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철강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회계 소관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차입금 ◦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세출	◦ 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 ◦ 그린스틸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지원 ◦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철강산업의 기술개발사업 ◦ 철강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 철강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 ◦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특구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녹색철강특구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지원 ◦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철강산업의 기술개발사업 ◦ 철강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 철강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 리	◦ 산업통상부장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함.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고로기술 도입과 함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제조업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발 저가 수입재의 범람,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강화, EU의 CBAM 등 환경·무역규제 심화로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2023년 기준 철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의 17.8%에 달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전환, 청정수소·무탄소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한편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철강산업을 국가안보·경제안보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여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그린스틸 전환기술 개발·상용화 지원,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향후 국내 철강 공급기반의 추가 약화나 탄소중립 대응 실패가 현

실화될 경우, 철강산업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 전체의 생산·수출 기반이 흔들리고 국가·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 지원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제로 평가됨.

이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공동행위 예외적 허용·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2025.11.21.)함에 따라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하였음.

동 대안에서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사업에 필

요한 비용은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등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²⁾을 첨부하였음.

따라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 및 철강산업특별회계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부대의견상 향후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만 명기하였으므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현행법 제14조³⁾에서는 중앙

2) 4. 부대의견

나.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등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향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의원안
별표 1 〈신설〉	별표 1 24 「 <u>철강산업 진흥 및 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u> 」	별표 1 24 「 <u>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u> 」

문의처

02)6788-5150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